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7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청구시 제출가능 서류 확대 (박성훈의원안) .. | 2 |



## I. 개요

###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77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3. 17.
- (3) 회 부 일 : 2025. 3. 18.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시 제출가능 서류 확대(박성훈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29의2)<br><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이 <u>운영</u>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해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u>심판청구서</u> 제출 가능<br><input type="checkbox"/> 서류 제출 시점<br>- 대상: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 <추 가><br>- 방법: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u>전송된 때에</u> 해당 서류가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 | <input type="checkbox"/> 제출가능 서류 확대<br><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이 <u>지정·운영</u>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해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u>그 밖의 필요한 서류</u> 제출 가능<br><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제출 시 접수 시점 명확화<br>- 대상: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또는 <u>그 밖에 필요한 서류</u><br>- 방법: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u>지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제출한 때에</u> 해당 서류가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br><input type="checkbox"/> 시행일: 공포한 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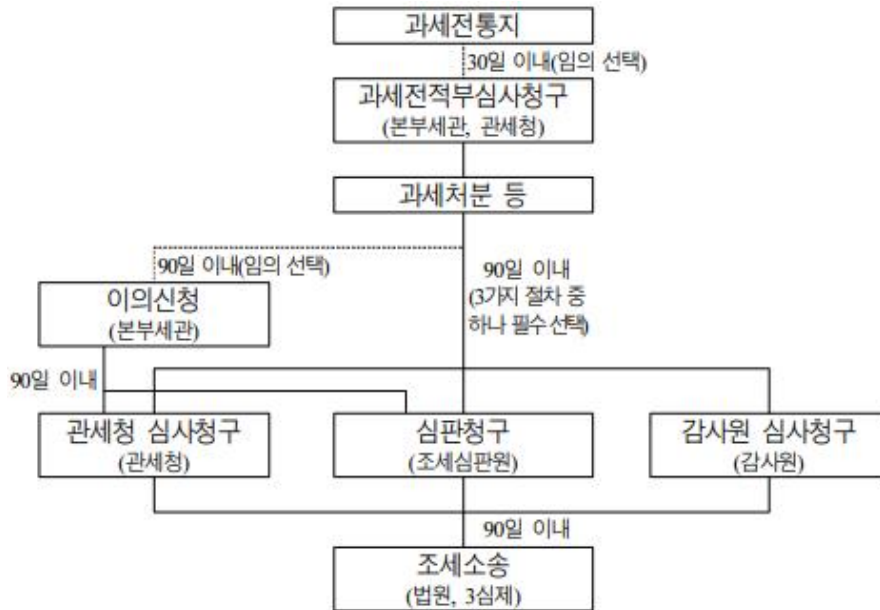
\* 박성훈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8977)

☐ 개정안은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확대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제출 시 접수 시점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함.

### [관세 불복절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2024.7.22.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sup>1)</sup> 동 제도는 권리구제 시점에 따라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

####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사전적 구제절차에는 과세관청의 처분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포함됨. 그리고, 사후적 구제절차에는 과세처분 이후 진행되는 절차로 이의신청,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음.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모든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됨.

이러한 조세불복절차 중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

기존에는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졌던 행정심판 절차가 최근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었음.

□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

---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도운영의 분산성과 접수방식의 다양성은 여전히 국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일반행정심판위원회<sup>2)</sup>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sup>3)</sup>에 속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46개, 그 외 특별행정심판기관이 20개를 차지하고 있음.

이 가운데 일반행정심판위원회 49개, 소청심사위원회 31개, 기타 특별행정심판기관 3개 등 총 83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0개 기관은 별도의 업무용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수기 방식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접수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기관, ②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 ③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 등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의 접근성과 제도 이용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기관 수가 방대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sup>4)</sup>

---

2) 행정심판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함.

3) 개별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전문성·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함.

4) 국민권익위원회, ‘원스톱 행정심판, 원스톱 권익구제’ 보도자료, 2024.7.8.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대상 행정심판기관]

| 2 통합 대상 위원회                           |                                           |          | II. 목표모달 수립     |                                           |           |
|---------------------------------------|-------------------------------------------|----------|-----------------|-------------------------------------------|-----------|
| “123개 위원회 중 11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통합 추진” |                                           |          | 범례              |                                           |           |
|                                       |                                           |          | 행정 온라인행정심판 미 사용 |                                           |           |
|                                       |                                           |          | 개별 시스템 사용       |                                           |           |
|                                       |                                           |          | 차분청 시스템 활용      |                                           |           |
|                                       |                                           |          | 행정심판법 준용 조항 있음  |                                           |           |
| 일반행정심판(57)                            |                                           |          | 특별행정심판(62)      |                                           |           |
| 연번                                    | 위원회명                                      | 설치 근거 법령 | 소청심사(46)        |                                           |           |
|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 연번              | 위원회명                                      | 설치 근거 법령  |
| 2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심판법    | 1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지위법     |
| 3                                     | 헌법재판소사무처                                  | 행정심판법    | 2~18            | 17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
| 4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심판법    | 19~29           | 11개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
| 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행정심판법    | 30~35           | 6개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지방공무원법    |
| 6~9                                   | 법무부 소속 4개 지방교정청 (서울, 대전, 대구, 광주)          | 행정심판법    | 36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
| 10~15                                 | 대검찰청 소속 6개 고등검찰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 행정심판법    | 37              |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
| 16~32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 38              |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
| 33~49                                 | 17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 39              | 헌법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
| 50                                    | 국회사무처                                     | 행정심판법    | 40              |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
| 51                                    | 감사원                                       | 행정심판법    | 41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인사법      |
| 52                                    | 국가정보원                                     | 행정심판법    | 42              |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인사법      |
| 53                                    | 대통령비서실                                    | 행정심판법    | 43              |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인사법      |
| 54                                    | 국가안보실                                     | 행정심판법    | 44              |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인사법      |
| 55                                    | 대통령경호처                                    | 행정심판법    | 45              |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무원인사법    |
| 56                                    | 법원행정처                                     | 행정심판법    | 46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 변호사법      |
| 5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행정심판법    |                 |                                           |           |
|                                       |                                           |          | 행정심판(16)        |                                           |           |
|                                       |                                           |          | 연번              | 위원회명                                      | 설치 근거 법령  |
|                                       |                                           |          | 1               | 조세심판원                                     | 국세기본법     |
|                                       |                                           |          | 2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
|                                       |                                           |          | 3               | 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
|                                       |                                           |          | 4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
|                                       |                                           |          | 5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 6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7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
|                                       |                                           |          | 8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공무원재해보상법  |
|                                       |                                           |          | 9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군인재해보상법   |
|                                       |                                           |          | 10              | 어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                                       |                                           |          | 11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법    |
|                                       |                                           |          | 1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보험법     |
|                                       |                                           |          | 13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                                           |          | 14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토지보상법     |
|                                       |                                           |          | 15              | 광업조정위원회                                   | 광업법       |
|                                       |                                           |          | 16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식물신종보호법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①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②신규로 구축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과 관련하여 총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언어적 특성과 1심 절차의 특성<sup>5)</sup>을 고려하여 4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9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2025년 9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점진적

5) 언어적 특성: 난민위원회, 절차의 특성: 특허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이의신청)

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관세법」 제129조의2<sup>6)</sup>에서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서류의 범위가 확대되면 행정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 역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             | 현행                        | 개정안                                      | 개정안 주요내용                                            |
|-----|-------------|---------------------------|------------------------------------------|-----------------------------------------------------|
| 제1항 |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 |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u>운영</u> |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u>지정·운영</u>             |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시스템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 |
|     | 제출 가능 서류    |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및 <u>그 밖에 필요한 서류</u> | 추가적인 증빙서류나 소명자료 등도 제출 가능                            |
| 제2항 | 제출          | 관세청장 또는                   | 관세청장 또는                                  | 정보통신망을 통해                                           |

#### 6) 「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 현행                       | 개정안                                                        | 개정안 주요내용                  |
|----|---------|--------------------------|------------------------------------------------------------|---------------------------|
|    | 시점 및 대상 | 조세심판원장에게<br><u>전송된 때</u> | 조세심판원장이<br><u>지정·운영하는</u><br><u>정보통신망에</u><br><u>제출한 때</u> | 제출되는 시점으로 제출<br>간주 규정 명확화 |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행정심판기관 통합 논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잠정 보류된 가운데,<sup>7)</sup> 기관 통합여부와 별도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 등 개별 기관차원의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25년 9월 현재 행정심판 통합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조세분야(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노동분야(중앙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토지분야(중앙토지수용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처분청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기관 통합이 보류된 것과는 별개로, 관세청은 국민의 조세불복청구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참여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보류되었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대상 특별행정심판기관(소청심사위 제외) 현황]

| 구분 | 분야   | 기관명          | 설치근거법령    |
|----|------|--------------|-----------|
| 1  | 조세   | 조세심판원        | 국세기본법     |
| 2  |      | 국세심사위        | 국세기본법     |
| 3  |      | 관세심사위        | 관세법       |
| 4  | 보상보험 | 건강보험분쟁조정위    | 국민건강보험법   |
| 5  |      | 장기요양심판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6  |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7  |      | 국민연금재심사위     | 국민연금법     |
| 8  |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   | 공무원재해보상법  |
| 9  |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사위 | 군인재해보상법   |
| 10 |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 11 | 노동   | 중앙노동위        | 노동위원회법    |
| 12 |      | 고용보험심사위      | 고용보험법     |
| 13 | 토지   | 중앙토지수용위      | 토지보상법     |
| 14 | 기타   | 지리적표시심판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15 |      | 광업조정위        | 광업법       |
| 16 |      | 품종보호심판위      | 식물신품종보호법  |

주: 음영표시된 위원회는 2025년 9월말 현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미사용 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 등 조세분야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둘째,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어 법령 해석상 혼

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운영·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확대는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나, 지정 가능한 정보통신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행정심판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서류’와 같은 포괄적 표현은 제출서류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제출서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기준과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은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위법·부당함을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외에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은 청구인이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원스톱 행정심판 외에도 지정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58 |

## 온라인행정심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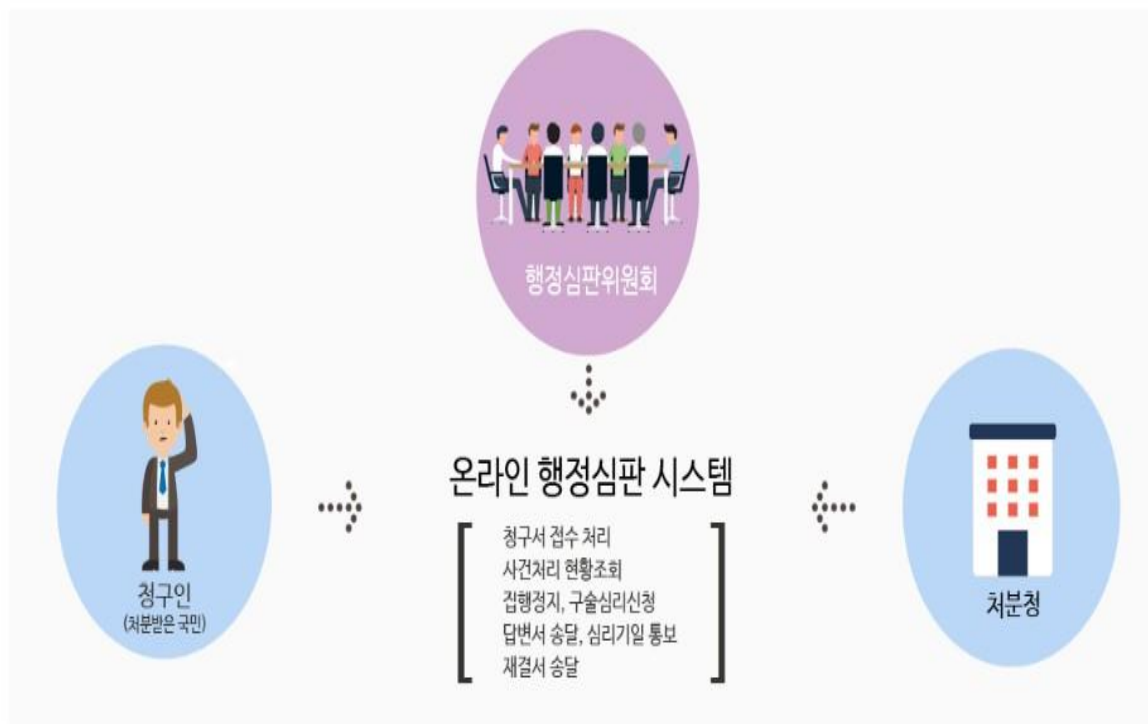
온라인행정심판이란 ▾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 온라인행정심판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 온라인 행정심판의 특징 및 장점



PC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지식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사한 재결을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발췌(<https://www.simpan.go.kr/nsph/index.do>)